래미안 센트리폴(2BL)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20.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 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시 주요성	모		(문양문의) 032-834-254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	8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12.20.(금)	24.12.30.(월)	24.12.31.(화)	25.01.02.(목)	25.01.08.(수)	25.01.11.(토)~25.01.18.(토)	25.01.21.(화)~25.01.26.(일)

■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견본주택 관람은 2024.12.27(금)~2024.12.31(화)까지 5일간 운영하며,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기간에는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 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방문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고지할 예정임)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을 위한 대상자 여부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의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래미안 센트리폴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32-834-2549)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유의사항

1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 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ଅଟମ୍ୟ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0	기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 충족	1순위, 12개	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은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조건 필요
-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 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 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걸린증ㅂ 	군기글 경염사 선경경합에 띄금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 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raemian.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 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 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미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공급계약쳬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분양공급계약 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공급 / 1·2순위))			0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20.(금)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12.30.(월)	24.12.31.(화)	25.01.02.(목)	25.01.08.(수)	25.01.11.(토)~25.01.18.(토)	25.01.21.(화)~25.01.26.(일)
Ⅰ 망 뗩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		■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견본주택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65-1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합니다.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 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 합니다.(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본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제출로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준일	특별공급	일반공급	관련 법령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	1년	1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 5호 가목의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주택과-38734호(2024.12.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40층 6개동 총819세대

[특별공급 407세대(기관추천 82세대, 다자녀가구 80세대, 신혼부부 147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7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8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3

(단위: m², 세대)

7 EU		ㅈ디싱		주틱	택공급면적((m²)	기타	게야	1111111111111	* 7 7		-	특별공급	·세대수			OIHLTIT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9200A	59A2	59.9200	24.7700	84.6900	40.3000	124.9900	28.8855	262	26	24	47	7	23	127	135	6
	02	059.8900B	59B2	59.8900	24.5000	84.3900	40.2700	124.6600	28.8710	40	4	4	7	1	4	20	20	1
	03	068.3700A	68A2	68.3700	27.3100	95.6800	45.9900	141.6700	32.9590	2	1	_	ı	-	1	_	2	-
	04	071.8500A	71A2	71.8500	25.7000	97.5500	48.3300	145.8800	34.6366	191	19	20	35	6	17	97	94	6
2024000730	05	071.8100B	71B2	71.8100	25.5600	97.3700	48.2900	145.6600	34.6173	34	4	4	6	1	3	18	16	1
	06	084.9100A	84A2	84.9100	30.0600	114.9700	57.1100	172.0800	40.9324	217	22	24	39	6	20	111	106	5
	07	084.8400B	84B2	84.8400	30.8800	115.7200	57.0700	172.7900	40.8987	72	7	4	13	3	7	34	38	2
	08	095.3400A	95A2	95.3400	32.8600	128.2000	64.1300	192.3300	45.9604	1	ı	-	-	-	-	-	1	-
		합 계									82	80	147	24	74	407	412	21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로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홈페이지 등의 주택형은 약식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금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 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 및 기타공용면적은 평형대별로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각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2	59B2	71A2	71B2	84A2	84B2	합계
		국가유공자	5	-	2	1	4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4	-	3	1	4	1	13
	1	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	3	1	4	-	12
일반(기관추천)		중소기업 근로자	4	-	2	1	5	1	13
특별공급		해외건설 근로자	1	-	1	-	1	1	4
		인천광역시	4	2	4	-	2	2	14
	장애인	서울특별시	2	1	2	-	1	1	7
		경기도	2	1	2	-	1	1	7
다자녀가구	C	<u>민</u> 천광역시 거주자(50%)	12	2	10	2	12	2	40
특별공급	서울특	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12	2	10	2	12	2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47	7	35	6	39	13	147
	노부모부	양 특별공급	7	1	6	1	6	3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23	4	17	3	20	7	74
	합	계	127	20	97	18	111	34	407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국가유공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 2023.09.25. 제정된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규정]에 의거「해외건설촉진법」제2조의 의한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근무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해외건설 근로자로서「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규정」제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 ,	лн			공급	금액		계약급] (5%)			중도금	t (60%)			잔금(35%)
표기	동/ 라인	구분 (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五八	니건	(0)		네시미	신국미	ナバベ	711	(계약시)	(30일 내)	2025-04-25	2025-10-28	2026-04-27	2026-11-25	2027-04-27	2027-09-27	지정일
		2층	8	195,782,400	332,217,6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201 =	3층	8	197,636,400	335,363,600	-	533,000,000	10,000,000	16,65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86,550,000
	201동 1,2,3,4호	4층	8	199,861,200	339,138,8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59A2	1,2,3,4오 206동	5층	8	201,715,200	342,284,800	-	544,000,000	10,000,000	17,2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90,400,000
	1,3,4,5호	6~9층	32	203,940,000	346,060,000	-	550,000,000	10,000,000	17,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92,500,000
	1,5,4,51	10~29층	160	205,794,000	349,206,000	-	555,000,000	10,000,000	17,75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94,250,000
		30~40층	38	207,277,200	351,722,800	-	559,000,000	10,000,000	17,95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95,650,000
		1층	1	191,332,800	324,667,2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2층	1	193,186,800	327,813,200	-	521,000,000	10,000,000	16,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3층	1	195,040,800	330,959,2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59B2	206동	4층	1	197,265,600	334,734,400	-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3902	2호	5층	1	199,119,600	337,880,4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6~9층	4	201,344,400	341,655,600	-	543,000,000	10,000,000	1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	10~29층	20	203,198,400	344,801,600	-	548,000,000	10,000,000	17,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30~40층	11	204,681,600	347,318,400	-	552,000,000	10,000,000	17,6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93,200,000
68A2	206동 1,4호	1층	2	216,547,200	367,452,800	-	584,000,000	10,000,000	19,2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204,400,000
		1층	3	221,738,400	376,261,600	-	598,000,000	10,000,000	19,9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209,300,000
	202동	2층	6	223,963,200	380,036,800	-	604,000,000	10,000,000	20,2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211,400,000
	1,2호	3층	6	226,558,800	384,441,200	-	611,000,000	10,000,000	20,55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213,850,000
71 4 2	203동	4층	6	228,783,600	388,216,400	-	617,000,000	10,000,000	20,85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215,950,000
71A2	3,4호	5층	6	231,008,400	391,991,600	-	623,000,000	10,000,000	21,15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218,050,000
	204동	6~9층	24	233,233,200	395,766,800	-	629,000,000	10,000,000	21,45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220,150,000
	3,5호	10~29층	120	235,828,800	400,171,200	-	636,000,000	10,000,000	21,8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222,600,000
		30~34층	20	236,941,200	402,058,800	-	639,000,000	10,000,000	21,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1층	1	219,142,800	371,857,200	-	591,000,000	10,000,000	19,55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206,850,000
		2층	1	221,367,600	375,632,400	-	597,000,000	10,000,000	19,85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208,950,000
71B2	204	3층	1	223,963,200	380,036,800	-	604,000,000	10,000,000	20,2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211,400,000
/ ID2	4호	4층	1	226,188,000	383,812,000	-	610,000,000	10,000,000	20,5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213,500,000
		5층	1	228,412,800	387,587,200	-	616,000,000	10,000,000	20,8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215,600,000
		6~9층	4	230,637,600	391,362,400	-	622,000,000	10,000,000	21,1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217,700,000

		10~29층	20	233,233,200	395,766,800	-	629,000,000	10,000,000	21,45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220,150,000
		30~34층	5	234,345,600	397,654,400	-	632,000,000	10,000,000	21,6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221,200,000
		1층	1	251,402,400	426,597,600	-	678,000,000	10,000,000	23,9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237,300,000
	203동	2층	6	253,998,000	431,002,000	-	685,000,000	10,000,000	24,25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239,750,000
	1호	3층	6	256,593,600	435,406,400	-	692,000,000	10,000,000	24,6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242,200,000
84A2	204동	4층	6	259,189,200	439,810,800	-	699,000,000	10,000,000	24,95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44,650,000
04AZ	1,2호	5층	6	261,784,800	444,215,200	-	706,000,000	10,000,000	25,3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47,100,000
	205동	6~9층	24	264,380,400	448,619,600	-	713,000,000	10,000,000	25,65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249,550,000
	1,2,4호	10~29층	120	266,976,000	453,024,000	-	720,000,000	10,000,000	26,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52,000,000
		30~38층	48	268,830,000	456,170,000	-	725,000,000	10,000,000	26,25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253,750,000
		1층	2	249,548,400	423,451,600	-	673,000,000	10,000,000	23,65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235,550,000
		2층	2	252,144,000	427,856,000	-	680,000,000	10,000,000	24,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238,000,000
	203동	3층	2	254,739,600	432,260,400	-	687,000,000	10,000,000	24,35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40,450,000
84B2	2호	4층	2	257,335,200	436,664,800	-	694,000,000	10,000,000	24,7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242,900,000
0402	205동	5층	2	259,930,800	441,069,200	-	701,000,000	10,000,000	25,05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45,350,000
	3호	6~9층	8	262,526,400	445,473,600	-	708,000,000	10,000,000	25,4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247,800,000
		10~29층	40	265,122,000	449,878,000	-	715,000,000	10,000,000	25,75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250,250,000
		30~37층	14	266,976,000	453,024,000	-	720,000,000	10,000,000	26,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52,000,000
95A2	204동 2호	1층	1	279,212,400	430,716,000	43,071,600	753,000,000	10,000,000	27,65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63,55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라인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인지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옵션) 품목 미포함 금액으로 계약자가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단,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5%)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대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 및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ㆍ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공급기준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모두 무식격 서리 모두 모두 모든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만 해당)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x27;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82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필요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수천기관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구선기원 	■ 해외건설 근로자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 해외건설 근로자는 2023.09.25. 제정된「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규정」에 의거「해외건설촉진법」제2조의 의한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최
	근 10년이내 1년 이상근무하고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해외건설 근로자로서「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규정」제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공
	급 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합니다.

● 기근구면 독결하다. □ 「주택공급에 관한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80세대

	- 3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리	l도 입주자 <u>.</u>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0	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7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를 말하며, 지	다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	록표등본	l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월 경과(지역	l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1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	50%(인천광	역시)→ 기타지역 거주자 5	0%(서울	·특별시, 경기도)						
	- 1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	양 주택 특	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때	가라 주틱	백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분을	을 포함하여 기타지역 거주지	ŀ(서울특	별시, 경기도)에게 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자녀가구 특	별공급 우선	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7	점수 순여	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② <u>"</u> HA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당첨자		메급칭크		기준	점수	이프						
선정방법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1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합니다.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
해당 시·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합니다.
거주기간(5)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 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2) : 주민등록표등본 ⁽²⁾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4-3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47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FUALTI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
대상자	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긴	t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	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합니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CI +1 -1	5년계	一 一 一 一 一 (33%)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100H	4단계	글단증법(137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5단계	大村アコ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기반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	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	너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합니다.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하	H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합니다.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	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	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지역 : 해당지역 기	 주자(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 자녀기준

비고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합니다.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미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ᄎᅒ고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건물+토지) 이하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 * 「초지법」제2조제1호 하가증의 사업장 소개 * 공부상 도로, 구거, 현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경우는 제외 합니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기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로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 유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	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	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	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기저 : 「ᄌ태고그에 과하 그치 병교1/가저제 저용기즈)에 이기하 천양가저 저스로 기즈으로 단쳐지로 서저하며 천양가저 저스가 보이어 기계 으로에 이하 작모으로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32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다채기	①무주택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당첨자 선정방법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LOGE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 H 야기조스	2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기합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u> </u>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	기간은 순위기산일을 :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기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	으로 전환한 경우 전략	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바	H우자가 주택을 소유 ⁶	마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	서 제외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1-5	새애치ᄎ	트벽고근	(「주택공급에	과하 그치.	제42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74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 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주거전용면
	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합니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M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	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 -	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100H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 -	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혼	트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5단계	* +1 7 7	미혼인	민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추첨공급 - -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 소득기준									
비고	- 소득 확인 시점									
		 J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		(해당 서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 구 소득 기주	<u>s</u>						
		•	비율	-		득금액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	----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 1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 「농지법 * 「초지법 * 사업장 * 공부상 * 종중소+ 받는 경	경우는 제외 합니다. 업」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업」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기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도 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당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네공사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청약통장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자격요건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합니다.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²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m²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② U 즈 태 기 기	22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①무주택기간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 <u>-</u>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본인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0177171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기합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 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합니다. 소형·저가 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 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합니다.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Ī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	
	니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합니다.	Ī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1
무주택기간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산정기준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일정안내

6

구분	청약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특별공급	24.12.30.(월)			+7-H-F-H-QL (+10)++(-/
이바고그	1순위	24.12.31.(화)	25.01.08.(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25.01.02.(목)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 또는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	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합니다.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08.(수) ~ 2025.01.17.(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이 가능 합니다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 됩니다.)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1.0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2025년 01월 11일(토) ~ 2025년 01월 18일(토) 8일간(10:00 ~ 16:00)	■ 래미안 센트리폴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65-1	■ 사전방문예약제	
예비 당첨자	2025년 02월 05일(수) ~ 2025년 02월 12일(수) 8일간(10:00 ~ 16:00)	- 건선성역시 선구구 독년중 205-1	- 홈페이지 (https://www.raemian.co.k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이전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자, 주택소유 등)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 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는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봅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고 미 소명 시에는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나, 서류 미제출로 인한 미확인의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공통서류 (기관추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진구전 특별공급 포함)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단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0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낙찰 증빙서류: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해당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④채권차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직계비속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단한 포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팩스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0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The state of the s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지거 이 기 회이니	но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circ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ногп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세대원 전원	소득입증서류)
					- 188 117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생애최초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특별공급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ㆍ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0	구진중국표모 간 (전세도함)	직계존속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글 o 포 = 한포, 출근에 o 글, 취직 한역한 모 못 취표기한 한력적기 '정확역'에 기색되어 있고, 예정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본인 및 세대원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0	부동산소유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합니다.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 존·비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실증명(상세)	직계 존·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받은자		0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주택: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시 (본인외 모두 제3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0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0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20.)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 인터넷 발급용(정부24) 인감증명서는 사용불가 합니다.(주민센터등 관공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23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23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근 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 동일) ※ 금년도(24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23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23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③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 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세무서
업 자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③ 세무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대표자	① 전년도(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급여받는 대표자의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①, ②, 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23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세무서/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 입증 서류 목록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내역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해당직장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입증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①세무서(홈택스)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5개 년도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소득세납부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세무서,(홈택스)
입증서류	이내 근로소득세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해당직장/세무서,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적용예시 :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세증명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있는 경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①,② 행정복지센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조회/발급>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③ 서울특별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축산과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三十	(해당자)			
해외근무자	0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단신부임)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0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됩니다.)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합니다.(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1.21.(화) ~ 2025.01.26.(일), 6일간 / 10:00 ~ 17:00	■ 래미안 센트리폴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65-1

- ※ 계약기간 공급계약 체결은 당첨자 본인이 지정하여 안내받은 방문일자 및 시간에 필히 방문하셔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계좌이체확인서)
계약시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본인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아파트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추가선택품목 계약 :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 : 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수입인지 세액(추가선택품목 계약 별도 진행 예정) : 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③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④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각각의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증서(100% 납입) 확인 후 1/2의 차액을 사업주체가 환불할 예정
	0		통장사본	본인	•수입인지 세액 환불용(계약자 명의 환불통장 사본)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1통 제출 (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 계약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합니다. ※ 인터넷 발급용 인감증명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0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의무(견본주택에 비치)
		0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서류		
	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견본주택에 비치
	0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대리인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1통 제출 (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인터넷 발급용 인감증명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본인외 모두	0		인감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견본주택 비치)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내용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2. 끝든 문위에서 성성이 있는 성구에는 사업구세가 제32호 제3성에 따른 호칭기전에 제전성한 기업제 업무(기업제를 역용하여 중입하는 경구로 현성)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 에미입구시의 현영 가뭄검구에 오뉴가 있는 영구에는 세현경한 가뭄검구가 다듬 문자의 에미입구시의 검구를 오피하는 영구에한 현영되며, 다듬 문자의 에미입구시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등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 *** *** *** *** *** *** ***	_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의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번 5만 다른 분양주택(분양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당점자, 본연 중복산정당[점자, 부적의 재단점자 지리 기준 1. 당점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이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면,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력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점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및 부적의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점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의 당점자의 지리 및 계약위소에 관한 사항 1. 성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조 입주자도집공교일 만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정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반호 위치,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성약 관상 시 신청자의 착오, 최조 입주자도집공교일 만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정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반호 위치,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성약 원칙에 따라 처벌을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간검색결과 수신원한 및 업주대상자의 자리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원과 경우에는 아파트 당점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모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전징점검으로 불법전대, 부정정약, 위상전입 등 불법행의 적별시 계약원로 성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점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가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조 제정한 및 제57조 제공원에 때문 부적격 당점자가 소원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6조 제상에는 해당하지 못하여 당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원단을 주택적의업무수하기관한국부통산원가 중단점을 수입하고 있어 기관 등단원을 가장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조 제정인 및 제57조 제공원에 따라 동단본은 자의 명단을 당점자 평단에서 식재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가의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필과를 동보할 때 제58조제(항에 때라 동단본은 자의 명단을 당점자 명단에서 식재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가 이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열과를 동보할 때 제58조제(항에 따라 동단본은 자의 명단을 당점자 명단에서 식정원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의 당점자가 다음 각 호의 아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한에도 불구하고 당점자를 보라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는 건축적 당점자가 다음 각 호의 아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점에 가는 공급 사업자에서 경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점에 가는 모든 보다를 모하고 경우에는 제2점에 가는 구리 보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경쟁이 있는 순위에 분관하고 기원하지 점을 보다 다른 모든 문자의 당점에 따라는 가를 보다 다만, 대5조제 경우 및 환경 보다는 등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2점에 대중하는 경우에는 지점하는 경우로 환경하는 경우로 환경하는 경우로 환경함이 대중 순위의 당점에 전용하여만 경상에는 전환 수위 전략적 당점자가 다음 각 호의 당의 당점에 대중 소위의 당점에 전환적인 가는 요순에 당점하는 가는 요신에 대접주자의 점수를 소점하는 경우로 환경함이 되었다는 되고 가 가능합니다. ** 무적의 당점자는 다음 각 등원환들 점점 전체 전환을 되고 가 가능합니다 전환 구시 기원이다는 공급하는 경우로 환경함이 대중 소위의 당점에 대중 구의 당점에는 건축하는 자격 입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하는 경우의 당점하는 건축하는 가 다음 보안 되었다는 요소에 대접하는 경우에는 전략적인 가 전환 전환 등의 보이기를 모시하는 경우로 환경함이 대접하는 경우의 가 가능을 보다 소계를 보려 다른 소계를 되었다면 등원함을 표하고 함께 경우로 조관한 경우의 당점에 대접하는 경우에는 전략적인 구성이 가 다음 순위 대접하는 것은 모인이 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이동당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의 제당함자 처리 기준 1. 영화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월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합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자리 합니다. (단. 원인어 동일주백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점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점자 선정에서 제외되니다센인이 동일 주택(독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33.25, 시행된 「주민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및 재당참체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및 부적적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광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 및 계약취소에 관한 시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 오, 최초 압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정약 신청한 시살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등 철취, 정약 관원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병위로 적별된 경우 등 부적적 및 부정한 병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성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기될 수 있으며, 계약급 납입반에 대해서 별도의 지금이자 없이 임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법 메비압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병위 작병 시 관련 병경에 따라 처벌을 수 있습니다. 2. 관계가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한 및 압주대성자의 자격확인점자 등 분양일정상 계약원로 이후 일원시점등로급 1회자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입자, 재건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의 해외를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가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에, 부정청학, 위장전입 등 불법형위 적별시 계약원로 상당시간 이후(압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한 및 제57조 제8한에 따른 부적적 당점자가 소영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청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6조 제상병업무수행기관(한국부등산원)에 등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지는 공급을 신청하라는 주택의 압구자모집공교의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가청약과일자의 기원구의 등 대상에 따라 사업주재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동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때당 등보안 지역 명보이다. 보험적의 명단관리 등 4억의 당해를 위한 가장 계점으로 함보한 다른 공급을 신청하라는 주택의 압구자모집공교의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가청약과일자의 기선구부를 이한 규칙,제58조 제1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지는 공급을 신청하다는 주택의 압주자고집공교의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가청약과일자의 기원구리 및 6억의 의 속자적으로 가장 경우가 보안되었다는 경우의 인주자고집공교의 기준으로 당점일부터 '수도권 및 투가청약과일자의 기원관리 등 전상하다 전상을 가장 기원 등인 다른 분양주학원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압추자인공공의 기준으로 당점일부터 '수도권 및 투가청약과임자의 기원관리 등 4억의 의료 상태 강점자가 대상으로 제상되어 가장에 점수이다 공급이다는 유학의 자연을 기관 보험되었다는 경임이 당하지 경우에는 기관에 경우에는 기관에 가장에 점수이다면 자연의 등보는 신축의 이라이 관리를 보면 기관시험 전상으로 가장 보안되는 경우 전상으로 가장 보안되었다는 경우의 안전되고 위상으로 가장 점수에 당한 수 있는 공병자의 단점 등의 상대적으로 가장 기원자의 전상으로 등로 가장 가장 보안되다다. 보험적인 등 대상으로 가장 기원 등인 자연의 기관 기원 등의 기관 기관 기원가의 전상으로 가장 경우에는 동안 가장 가장 보안되었다. 보험자는 기관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발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의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특별공급 당첨자 건청에서 전성) 제 기본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점자로 신청될 경우 일반공급 당점자 선청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특별공급 충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점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및 계약 *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의중 당점자 및 부격격 당취자의 조로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판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점제한 작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의, 최조 입주자오집공교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반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의, 최조 입주자오집공교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반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리사례 변호 및 도용 등 불법형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성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담임됐에 대해에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급만 환불하며, 당천취소 세대는 당천유형별 에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형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수 있으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활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원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급 1회자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업점,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로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해, 부정성약, 위장전입 등 불법형위 적발시 계약원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9억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의 당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9억 제52조 제3항에 관한 부수록하면 가연기관가 당근 영취에 통화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그 명단을 구성 위한 모두 당한 당취에 통화합니다. - * 주택하업으로 해당하지 못하여 당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그 명단을 보고 무료하고 전점으로 당취되다 무신 보고 및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전환공공원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인간 사건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에 보고 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전환공공원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인간 사건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청에도 불가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적으로 보고하고 선정되는 공합의 전용을 보고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적으로 사업자의 사건적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강쟁이 있는 건식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관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처럼 등적 수 있는 현상자인는 공단 자격에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여행 순위의 당점자 전상한 가검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순자별 자격(소재 및 계좌부활요청사 (계약장소에 발문하여 부적적 당점 사유가 고역성 보안 다른 사업 기계에 구적 등 당면 자연 경제가 자급 당치 사업주에 대접하고 사업주에 제조하고 당치사실 사업적 당면 경제가 제상되었다는 자격적 당점 서로 환경하고 생각하고 사업적 당면 생각이 관계적으로 당면 하는 자급 사업자의 기원 수 모든 자격 여전상인 현상자인 등 당시 가격에 점수 도본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보 기계 전상 기원 사업주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여행 순위적 당점 기계 환경 가격제 점수(가검제를 공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여행 순위적 당면 기계 보안된 기계 원칙 기계 원칙 기계 환경 기계 전상 기계 원칙 기계 원칙 기계 전상 기계 전상 기계 전상 기계 전상 기계 전상 기계 점상 기계 전상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이용 당첨자 및 계약 당첨지의 처리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작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및 계약 기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작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작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성구에 관한 대한 부별을 모 있을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청상 계약한 경우에는 어피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입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에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가관의 전신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원로 이후 일정시점(중도급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원로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입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형 및 제57조 제8한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155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하약업무수행기관(한구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정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원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1항에 대라 통보원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대 따라 사업주체에 전소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모 등보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의 자연 소원 사업 기관으로 단적되는 포함의 입주자(인간 사건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당점이 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점자으로 포함을 선정된 수 없습니다. 1. 같은 순위에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산정사원 전략에 보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산정사원 전략적 당점자는 경우 한국원 한국으로 한정함) 또는 공급 산정사원 전략적 당점자는 본은 수업 시작 및 계작자원장소에 상원장소에 방문하여 부적 당점 사업자 기관 전략 전략 전략 사업자에 제출하고 '당점사원 전략 전략 시작 및 제작자원자 가 입하여 한국적 당점사원자 본부가 가능합니다 역사 전략적 당점사원자 전략 시작 및 제작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자원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시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정약 신청 산 신청자의 착고, 최초 입우자묘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정약 신청한 산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선시류 반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적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명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안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인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망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상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당단을 주택하약업무수병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주택정악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라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으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가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한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산연주체는 부칙적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순계별 자격(순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대당 순위의 당점에 되는 단는 작으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점사실 수계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적 당점 사유가 고의상 없는 단순 착으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점사실 수계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 당점 사유가 고의상 없는 단순 착으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점사실 수계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 당점 사유가 고원함 없는 단순 착으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원하여 제출하여야마 한 주택적임 당점자만 통보가 가능합니다. *어려면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원 데반입주자 전수보다 갈러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상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반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선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남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금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점유형별 예비임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병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향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자 등 분양일정상 계약원료 이후 일정시전(중도급 1회자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제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정경,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검검으로 불법전에,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형위 적발시 계약원로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임일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당첨자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적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급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급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에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급 1회자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임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임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6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형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정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의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임주자(민간 사전정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및 부적격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항 및 압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원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압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료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헌창점점으로 불법전대,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압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성악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동보합니다. ※ 주택청악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동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라 동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업지역 1년, 수도권 및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업지역 1년, 수도권 및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업지역 1년, 수도권 및 6개월, 위축지역 당첨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혜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고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부적적 당점사실 서계 및 계좌부활요정상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등 병좌사일 전후 보안 기관 등 보안 기관 보안 보안 가장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로 조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전수보다 간이는 작용이는 자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전경 시계을 참고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대통하고 당점에는 자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점수 보는 강시나 낮은 경우에는 제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의 처리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방향이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임,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정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동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신정될 수 없습니다. ※ 산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현가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적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 당점 사유가 고양의 보역적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에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에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반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갈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에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반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갈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에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반 예비입주자 점수되어 되었다면 하다 되었다면 하다 기점적이 되었다면 하다 전략적 당착자명단 공환적이 부적적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및 계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임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 2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나격적 당첨자보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방자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예비업주자 전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취소에 관한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및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의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적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에비업주자의 점수를 조과한 경우에만 예비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에비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항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인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에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에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에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에비입주자 사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에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신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점격 당첨자의 B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에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공구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명단관리 등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명단관리 등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타 - '무농산 거래신고 능에 관한 법률 시행령」세3소 규성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수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 (최초	ļ	7151	
		기타	•'무농산 거대신고 능에 관안 밉듈 시행덩」세3소 규정에 의거 밉인외의 사가 실세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수백을 배수하는 경우 해당 수택 매매계약 (죄초

계약체결조건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ㆍ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주체를 통해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분은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ㆍ「인지세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유의사항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ㆍ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중도금/잔금	수협은행	1010-2663-4555	삼성물산㈜

-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단지 동호수 10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301동 3001호 홍길동 : 3013001홍길동)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금융기관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적용)
- 정부정책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1,2,3블록의 중도금 대출기관 및 이자율은 블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협의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5% 납입 후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시(열쇠 불출일)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귀책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유하지 않은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것으로 보는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경우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m²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m²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합니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합니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일 경우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합니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10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은 기본제공 품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배관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不同志)			공급금액(제:	조사 : 삼성전자)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형	설치위치 및 수량	선택1	선택2
7747			무풍	Infinite Line
5042	선택1	거실+안방 / 2개소	3,920,000	5,600,000
59A2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 4개소	7,460,000	10,720,000
59B2	선택1	거실+안방 / 2개소	3,920,000	5,600,000
5982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 4개소	7,460,000	10,720,000
68A2	선택1	거실+안방 / 2개소	4,100,000	6,020,000
08A2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 4개소	8,090,000	11,580,000
71 4 2	선택1	거실+안방 / 2개소	4,100,000	6,020,000
71A2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 4개소	8,090,000	11,580,000
71B2	선택1	거실+안방 / 2개소	4,100,000	6,020,000
7102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 4개소	8,090,000	11,580,000
0442	선택1	거실+안방 / 2개소	4,190,000	6,110,000
84A2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5개소	9,690,000	13,960,000
0.402	선택1	거실+안방 / 2개소	4,190,000	6,110,000
84B2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 4개소	8,180,000	11,670,000
0542	선택1	거실+안방 / 2개소	4,190,000	6,110,000
95A2	선택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6개소	11,680,000	16,740,000

■ 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고	·급금액					
(주택형)	안	방		주방가구					
약식표기	드레스룸 고급화	수납강화 화장대	외산 주방가구	외산 주방가구 와이드다이닝 디럭스형	주방 고급화 (세라믹 타일 상판, 벽체)	국산 주방가구 와이드다이닝 디럭스형			
59A2	2,280,000	1,160,000	27,790,000	-	8,030,000	-			
59B2	-	1,200,000	29,340,000	-	7,850,000	-			
68A2	2,280,000	1,260,000	27,790,000	-	8,030,000	-			
71A2	2,910,000	1,160,000	35,860,000	-	8,700,000	-			
71B2	2,290,000	1,160,000	30,620,000	-	7,780,000	-			
84A2	2,620,000	1,190,000	35,010,000	51,310,000	9,160,000	7,380,000			
84B2	2,310,000	1,220,000	32,520,000	-	8,390,000	-			
95A2	2,620,000	1,290,000	35,130,000	51,840,000	9,160,000	8,120,000			

■ 마감

		공급금액										
	전실	클린현관	패키지	복도	세탁실	거실						
(주택형)		선택1	선택2									
약식표기	와이드 강마루	3연동 자동중문		복도 고급화 패키지	ᄞᅜᅺᄾᆝᆝᆘᅣᄾᆡ	기시 이트의 그그치4	기시 이트의 그그리?					
	와이드 성마루	+ 천장형 공기청정기	3연동 자동중문	국도 고맙자 페기시	반건식 세탁실	거실 아트월 고급화1	거실 아트월 고급화2					
		+ 신발장 하부 간접등										
59A2	1,700,000	4,480,000	2,530,000	3,170,000	2,290,000	4,520,000	4,790,000					
59B2	1,600,000	4,470,000	2,530,000	3,080,000	2,300,000	4,520,000	5,130,000					
68A2	1,900,000	4,480,000	2,530,000	3,170,000	2,290,000	4,520,000	4,790,000					
71A2	2,000,000	4,270,000	2,520,000	2,820,000	2,280,000	4,650,000	4,980,000					
71B2	1,900,000	4,060,000	2,520,000	3,020,000	2,300,000	4,650,000	5,070,000					
84A2	2,400,000	4,280,000	2,530,000	3,590,000	2,320,000	5,310,000	5,560,000					
84B2	2,400,000	4,280,000	2,530,000	3,210,000	2,290,000	5,310,000	5,560,000					
95A2	2,700,000	4,040,000	2,600,000	3,590,000	2,410,000	5,310,000	5,560,000					

[※] 거실 아트월 고급화2 옵션의 경우 거실아트월 고급화1 옵션 선택 시 선택가능한 품목입니다.

■ 냉장고장 옵션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약식표기	선택1	선택2	선택3				
ㅋㅋㅛ기	빌트인 김치냉장고장	수납 팬트리	비스포크 냉장고장				
59A2	1,560,000	210,000	140,000				
59B2	1,730,000	390,000	140,000				
68A2	1,560,000	210,000	140,000				
71A2	1,730,000	390,000	140,000				
71B2	1,730,000	390,000	140,000				
84A2	1,730,000	390,000	140,000				
84B2	1,730,000	390,000	140,000				
95A2	1,730,000	390,000	140,000				

[※] 냉장고장 옵션의 경우 선택1,2,3 중 1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냉장고장 옵션 선택1의 경우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설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1/ - 1										(=	2, 1 1 1 1 1 1 1 1 2 1 2)
						공급금액					
	거	실		주방							욕실
(주택형)	거실 조명 고급화		식탁 조명 고급화		인덕	인덕션					
약식표기	선택1	선택2	식탁 조명 고급화	와이드 다이닝 동시 선택 시	빌트인 인덕션 3구	비스포크 AI 인덕션 Infinite Line	비스포크 후드 Air	살균수 일체형 싱크 수전	스마트 주방TV폰	주방TV폰 벨트인 제습기	외산 욕실 수전
59A2	1,870,000	1,200,000	1,980,000	-	870,000	1,990,000	690,000	630,000	640,000	1,750,000	3,330,000
59B2	1,960,000	1,200,000	1,980,000	-	870,000	1,990,000	690,000	630,000	640,000	-	3,330,000
68A2	2,060,000	1,200,000	1,980,000	-	870,000	1,990,000	690,000	630,000	640,000	1,750,000	3,330,000
71A2	1,830,000	1,200,000	2,200,000	-	870,000	1,990,000	690,000	630,000	640,000	1,750,000	3,330,000
71B2	1,880,000	1,200,000	2,200,000	-	870,000	1,990,000	690,000	630,000	640,000	1,750,000	3,330,000
84A2	2,020,000	1,200,000	2,200,000	2,510,000	870,000	1,990,000	690,000	630,000	640,000	1,750,000	3,330,000
84B2	2,020,000	1,200,000	2,200,000	-	870,000	1,990,000	690,000	630,000	640,000	1,750,000	3,330,000
95A2	2,200,000	1,200,000	2,050,000	2,430,000	870,000	1,990,000	690,000	630,000	640,000	1,750,000	3,33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구분	내용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벽부형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가 기본 제공 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타입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의 세부사항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이며, 설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견본주택 설치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수준의 제품으로 납품/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 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 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어플리케이션 제어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외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할 시 별도의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연
	결할 경우 A/S가 불가능 합니다.
	• 견본주택 71B타입(인덕션 3구)과 84A타입(Infinite L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견본주택 59A타입 설치)
	설치됩니다.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덕션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수준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됩니다.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됩니다. ・해당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의 가스계량기 이외의 세대 내부 가스배관 및 가스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 71B, 84A타입에 설치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배기형 레인지후드가(견본주택 59A타입 설치) 설치됩니다.
레인지후드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수준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되며 디자인, 재질과 모델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제습기 특성상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수준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 됩니다. •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살균수 일체형 싱크수전	・견본주택 71B타입에 설치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일반 국산 수전이 설치됩니다.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수준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되며 디자인, 재질과 모델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욕실 외산 수전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설치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일반 국산 수전이 설치됩니다.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수준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되며 디자인, 재질과 모델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공통유의사항	 계약 후 자제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옵션중도금 납부일 이후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입주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본공사 시 제조사,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제시된 선택품목에 한하여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행사 이전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가 선택품목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 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수입 주방가구는 국산 주방가구와 디자인, 세부 색상, 구성, 디테일, 악세사리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과 카탈로그를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기본제공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타입별 평면구조에 따라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형태, 규격, 디테일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복도 고급화 패키지 옵션 선택 시 침실 1, 2, 알파룸(해당 타입)에만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며, 욕실에는 여닫이문이 적용됩니다.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실외기실 등) 외부창호는 단창 또는 그릴 등으로 설치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에 의해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금 일정 및 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납부일정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미입금 시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제반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주예정일

- 2028년 0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단,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관리예치금으로 부과하며, 관리예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 「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36, 37, 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 동법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차장(지하), 전기/발전기실(지하), 펌프실(지하), 옥외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1개소), 어린이놀이터 / 유아놀이터,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카페, 주민회의실, 코인세탁실) 등 [카탈로그 참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2.7m	2.3m (지하주차장 최상층 2.7m)	2.1m	

■ 내진설계

·건축법 제 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 48조의 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g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석우엔지니어링(주)
감리금액	3,023,631,600원	775,900,000원	744,15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336,318,450,000원	01282024-101-0012400 호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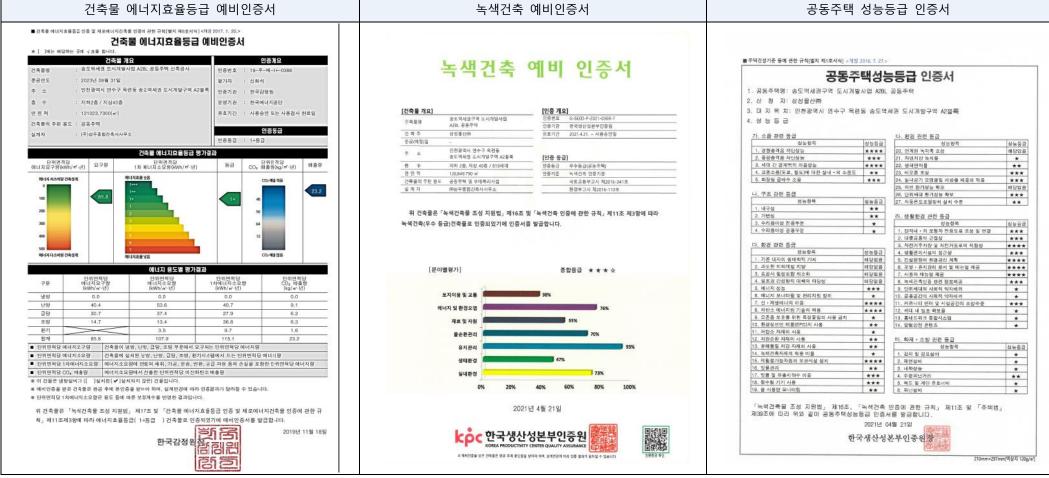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다여자비 즈스/기무)	저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설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제7조제3항 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 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부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 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품을 거실, 침 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부속동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므로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시공사)
상호	삼성물산㈜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상일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015762

12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일반유의사항

- •본 계약은 2024.10.30. 사업계획 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사업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동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며,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1, 203, 204, 205, 206동 (인근동 포함)]
- •계약 체결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 공사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 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마감사양, 조경 사양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기반시설공사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공통 사항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옥상조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공용)보도는 준공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 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부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및 환지처분이후 대지권 등기(환지 및 체비지)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연수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의사 표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 선정된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진행 예정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목업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기로 합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초등학교 배정은 (가칭)옥련1 초등학교 배정 예정으로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 ·동 공동주택 입주세대의 초등학생 배정교인 (가칭)옥련1 초등학교는 '28.3.1. 개교예정 입니다.
- ㆍ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비류대로, 독배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및 철도로 인한 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은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입니다.
- ·사업승인조건상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단지내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 시설은 운동/학습/여가 시설 등이 1,2,3블록 각각 단지 규모에 따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블록에는 주방이 같이 마련되어 식음서비스가 가능한 카페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1, 2블록에는 주방이 없는 일반 카페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주 초,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1,2,3블록 통합으로 커뮤니티 시범운영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1,2,3블록 합산 총 5억원 한도 내 커뮤니티 운영 인건비, 에너지비 지원)
- ·시범운영 기간에는 1,2블록 입주민들이 3블록 식음서비스 공간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나,관련법률 및 규약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ㆍ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향후 운영 방법을 결정할 예정으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인접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이용 및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공공이 상시 이용가능토록 개방되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TX, 월곶·판교선 등 철도계획은 국가철도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 품절, 생산 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 거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자"에게 통보하고,'사업주체'인 삼성물산의 결정(삼성물산에 위임)에 따릅니다.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색 또는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미세한 이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단종, 품절, 품귀, 해당 제조업체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및 시트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및 시트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자재의 경우 자재 특성상 표면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 마루는 같은 제품이라 하여도 옹이가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으며,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의 경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아트월 및 벽체에 부착된 타일은 시공법에 따라 골조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TV설치 등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마감재 관련 사항

•세대 내부	마간재/마루	도배지 시	= 타익	에지니어드 스토	트 등\이 제조사	및 사양으	. 보고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_ 그 베 (기) , (기)	ㅡ, ᅴ ㄹ	, 뜨게되어— ——	그 이게 게ㅗ이	ᄎᄭᄋᆫ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철도,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전시품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건립세대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급계약서, 옵션 안내문 및 계약서를 확인바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들어가는 전시품에는 가구 및 조명과 함께 전시조명에 들어가는 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전원은 본공사 시 공급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합니다.

견본 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홈 네트워크 기기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홍보물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마감재의 제조사 및 사양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제공되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CG와 견본주택 시공내용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유상 옵션 상품, 기본제공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 ·'매수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단, 벽체공용면적 제외) 및 기타공용면적은 평형대별로 전체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차도 및 보도)의 폭과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항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내 상가는 대지가 별도로 구획되지 않고 공동주택과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며, 상가 주차장은 아파트와 단지 출입구를 공유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동별 편차가 있을수 있으며,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합니다.
- 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종 인증(녹색인증, 건물에너지 등) 및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결로방지설계기준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 적용될 수 있고, 적용 부위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도로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는 옥외배관 및 기반시설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타입,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관련사항

단지

일반

사항

배치

-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소공원, 종교시설, 도로, 학교,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설치 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운영실(헤스티아 라운지 등)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나 공용창고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되며, 동별/세대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고, 타입별로 크기 및 형태,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한 보관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 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 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설치 유무 및 형태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휴게공간, 자전거보관소, 재활용쓰레기보관소, 상가, 옥외출입구, 드롭존 등이 설치되는 인근 동에서는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승강기, 계단실, 옥상구조물, 옹벽,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 ·동 주변에는 인접동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사우나,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열교환실, MDF실, 재활용쓰레기보관소 등), 보행통로의 배기구, 환기구 및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 ·동 주변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자전거보관소, 재활용쓰레기보관소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개소,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 •다음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재활용쓰레기보관소,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한전인입개폐기, 열교환실, 실외기실, 주민공동시설 및 상가 등)과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지 내 한전인입개폐기 및 인입맨홀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 203동, 204동 주변 인근 / 발전기실 : 203동, 204동 주변 인근 / 한전인입개폐기 : 202동, 203동 주변 인근 / 기계실, 펌프실 : 202동, 203동, 204동 주변 인근 열교환실 : 204동 주변 인근 / 지열펌프실 : 201동, 203동, 204동 주변 인근 / 사우나 기계실 : 205, 206동 주변 인근 / 우수조 : 201동, 203동, 205동 주변 인근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차량출차주의등 경보음 포함)와 산책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 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주차장 진출입 램프, 드롭존, 옥외 주차관제 출차주의등: 201동, 202동, 203동 주변 인근]
-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 독배로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높이 8m)및 단지 남서측에 비류대로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높이 12m)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인해 저층부 일부 세대의 조망,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여부 및 범위, 형태, 재질, 높이 등은 시공 시 소음측정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는 동은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의 실외기가 동 인근에 설치 되어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 실외기 위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 주차램프 지붕에는 옥상조경이 설치되고, 지붕구조물, 지붕장식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주변동[201동, 204동, 205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및 보안상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옹벽, 석축,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대수 및 인승은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됩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의 주변에는 실외기 또는 급배기 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인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
- •건축한계선은 지상층 건축물만 해당 대상이며, 조경시설물, 문주, DA, 재활용품 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톱라이트 등 지상층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비건축물은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 ·코어별 승강기 인승, 대수, 속도, 운행 층수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됩니다.
- •코어별 승강기 인승, 대수,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세대 발코니 창에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201동 1~2호 세대 코어 17인승 속도 150m/min 1대, 201동 3~4호 세대 코어 17인승 속도 150m/min 1대, 202동 1~2호 세대 코어 17인승 속도 150m/min 1대, 203동 1~2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3동 3~4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5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50m/min 1대, 204동 1~2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4동 3~5호 세대 코어 17인승 속도 150m/min 1대(피), 17인승 속도 150m/min 2대, 205동 1~2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3~4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5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50m/min 1대, 205동 1~3호 세대 코어 17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17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3~4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5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1~3호 세대 코어 17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17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속도 180m/min 1대(피), 22인승 속도 180m/min 1대, 205동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수도 180m/min 1대, 205당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수도 180m/min 1대, 205당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수도 180m/min 1대, 205등 4~5호 세대 코어 15인승 수도 180m

주동

- ·레벨차이로 인해 주동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저층부 석재마감과 다른 마감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구조물은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동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 피뢰침, 측격보호형 피뢰침(건물 외벽 보호), 경관조명,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옥탑 및 지붕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위치, 수량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우편함은 일반우편수취함이 설치되며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조경, 벽면녹화의 계획(적용여부, 설치구간 및 형태, 마감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공동주택 로비, 필로티의 평, 입면 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 천장고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ㆍ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구조물 측면에는 줄눈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PIT 중 일부 또는 PIT 전체의 천장 및 바닥, 벽체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각 동 옥상에는 통기배관이 설치되며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및 필로티에는 제연휀룸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6동 옥상에 비상용 소화수조가 설치됩니다.
- •지하 커뮤니티에 카페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 202, 204동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 돌출 장식물, 옥탑장식물, 동출입구 등에 의해 일부 채광 및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전파수신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옥상층에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옥상층에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고 일부동 층 및 지하주차장에도 별도의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TV공청 및 위성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옥탑 및 지붕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위치, 수량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 설치위치 : 206동]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 옥상층 203동, 205동]

[이동통신 중계장치 : 옥상층 203동, 205동, 지하1층 203동 통신실, 204동 통신실, 205동 통신실]

• 입면 디자인을 위해 경관조명, 입면변화, 돌출 구조물 및 커튼월룩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주변 세대의 야간 빛 간섭, 주간 채광 간섭, 햇빛 반사 및 우수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시공 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공 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글씽 씨 진글표의 씨님글 뒤한 승인으로 승승수 승포의 글씽 씨 뒤씨, 세고, 씨승은 한영을 수 있다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접근거리 및 지하주차장을 통한 접근여부 등이 동별로 상이합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답은거나 꽃 시하구시층을 중한 답는어구 중에 중을로 중에답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 및 기능, 구조, 성능개선, 배관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및 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계획승인 도서, 견본주택,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설계 및 공사 진행중 시설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기기류는
보리 복리	붙박이형 가구 및 운동기기만 제공합니다.
시설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블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 시 피트니스 운동기구의 사양, 종류, 배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열리는 창의 크기,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PC와 RC로 복합설계되어 있으며, 구조계산에 따라 부재의 크기 및 형태, 위치, 특성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단지는 2019. 02월 건축심의를 접수한 단지로, 2019. 03월 개정된 주차구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차대수 : 1,025대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 / 확장형, 경형, 평행주차, 장애인주차를 제외한 일반주차구획의 폭은 2.3m 119대, 2.4m 362대로 계획 되었습니다.
	(향후 세부 주차대수는 시공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또는 건식판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I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사용가능한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지하1층에 무인택배함이 동별 1개소 설치되며, 택배보관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10	·주차유도시스템은 P1,P2 주차장에 설치되고 위치와 수량 등은 대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최상층은 택배차량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차량동선의 유효높이는 2.7m 로 계획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이 PC로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대수에 전기차 충전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 가능한 주차대수는 축소됩니다.
	•지하주차장에 급속/완속/이동형충전기용콘센트 등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되며, 그 형태는 자립형/벽부형/천장형 등으로 설치될 수 있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전기차 충전설비 운영방식은 단지 내 자체 서버 운영 및 관리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전기차 충전사업자 운영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주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 안내서비스를 위하여 주차장에 안내판 및 안내표지가 설치되며 입차 차량은 안내판의 안내에 따라 주차위치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위치는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이동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위치로 안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드 타입의 원패스 Tag(세대당 2EA)가 제공되며, 원패스 Tag 소지를 통해 공동현관 자동 문열림,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목적층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에는 수경시설(자연형/인공형 수경시설 등)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조경의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수경시설,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 74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레벨 변경에 따라 옹벽/자연석쌓기 등 시설물이 설치
조경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대관인허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구간·면적, 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 시설(어린이집/경로당) 옥상에 녹화 및 조경시설은 실시공 시 설치유무 및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スカロ	·단지 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 ㅁㅈ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의 반영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주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 및 색채, 줄눈, 외장재 재질, 커튼월룩프레임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6-71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가	·3블록 단지 내 상가 입점협약서를 체결한 크레버스(청담어학원, 에이프릴, CMS 등 운영) 및 커넷팅더닷츠(째깍섬 운영)는 입점을 확약하였으나 업체 사정에 따라 입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대관련사항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 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점검구 크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및 욕실 상부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인테리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특히 주방가구(하부장, 아일랜드장 하부), 발코니, 세탁실, 현관, 신발장, 샤워부스가 설치되는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단열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시공 시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ㆍ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침실 및 욕실 문 등의 도어록 사양은 키가 없는 버튼 타입 입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의 대형화에 따라 신규 전자제품은 주방가구 및 발코니 등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시트판넬의 나누기 및 패턴은 본시공 시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의 형태는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타입은 평면구조에 따라 붙박이장 형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아트월 옵션 설치 가능 여부 및 위치는 평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침실벽체, 욕실벽체 등 내부벽체는 콘크리트 또는 건식벽체로 시공됩니다.(발코니, 세탁실, PD벽체 포함)
- ㆍ단위세대간 벽체는 공사용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중 일부 오픈될 수 있으며, 준공 전 골조,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막습니다.
- ㆍ침실, 화장실 문등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내부 구성, 붙박이장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합니다.(붙박이장 위치는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시트, 도배지, 타일, 마루 등)는 제조사 및 컬러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해당 실 창호 및 커튼박스 유무 또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선반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코너선반, 악세서리 제공 여부,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가구 측면이 가열대와 인접시 방열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에 따라 아트월 설치 위치 및 길이, 시공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의 디테일, 수납공간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세대 천장고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목창호의 사이즈, 폭 등은 타입, 천장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현관중문 옵션의 사이즈, 열림 폭 등은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에 따라 현관 디딤판의 폭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단열재는 시공성, 마감품질 확보를 위하여 동등 수준의 성능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인허가) 또는 인증의 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ㆍ후드 사양에 따라 주방가구 상부장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장 수납 공간 최대 확보를 위해 후드 좌우 여백 치수가 비대칭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대 평면 계획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에는 배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 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1층 세대 천장고는 2,600mm 이며, 욕실 천장고는 2,300mm 이며,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 특화세대(68A2, 95A2) 거실발코니 돌출부위 천장고는 2,300mm 이며,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기본으로 제공되는 국산 주방가구와 유상옵션 국산 및 외산 주방가구의 수납량 및 가구조명, 가구콘센트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타입은 평면 구조에 따라 외산주방가구 유상옵션 선택 시 코너하부장의 인출식 선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타입은 외산주방가구 유상옵션 선택 시 측면 특수수납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타입: 59A2, 59B2, 68A2, 71A2, 71B2) ・일부 타입은 평면 구조에 따라 외산주방가구 유상옵션 선택 시 유리 플랩 상부장 대신 유리 여닫이 상부장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ㆍ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ㆍ안방 발코니 전동식 빨래건조대 이용 시 타입에 따라 우오수 배관 실외기실 도어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공간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 설치 부분의 난간턱, 수벽의 높이 및 그릴의 재질,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홈통, 환기구, 바닥단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니 ㆍ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공간은 평면구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 유효폭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 • 일부 발코니에는 입면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기실 ・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 두께 확보 및 품질 향상의 이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ㆍ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면구조 및 배관간섭여부 등에 따라 커텐박스 높이 및 크기는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규에 따라 각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1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는 미설치됩니다.) ㆍ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입상배관 및 가스미터기는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실외기실에는 가스입상배관 신축이음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와 간섭되지 않도록 환기구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충별, 타입별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세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ㆍ공동주택 외부장호에 설치되는 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재질, 크기, 색상, 난간대 재질/높이 등은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마감재 창호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타입의 세대일지라도 동선에 따라 현관문의 열림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ㆍ본 공동주택에는 유리난간 적용으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게양대는 설치되지 않으며, 국기게양대는 각 동 출입구에 1개소씩 설치 예정으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본 공사시 동등 사양의 창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개폐범위,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 시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창 중 층당 1개소는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로 설치되고, 창호가 2개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창은 고정형 창으로 설치됩니다.
- ·계단실 창은 고정형으로 설치되며, 환기를 위해 코아별로 창호사이즈를 고려하여 일부 오픈형(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실 최상층에는 배연창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분전반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03.) 개정에 따라 노출된 장소(침실도어 후면 등)에 설치되고 세대별, 평형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1~3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식탁등은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식탁 배치 후 그 상부에 설치되며, 평형별 조명기구 타입 및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홈플랫폼('홈닉')

홈플랫폼 서비스는 홈IoT(조명/난방 제어 등), 생활 정보,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단일 앱으로 통합하여 입주민에게 새로운 User Experience를 제공합니다.

- ※ 홈플랫폼('홈닉')은 서비스사의 운영 현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 및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플랫폼('홈닉') 서비스는 성능 개선 또는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홈닉 서비스사의 운영 현황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은 변경 및 제외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 위치, 수량 등은 옵션 선택 및 타입별 평면 구조에 따라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천장 내 전기 배관/배선은 노출 시공 됩니다.
- ·전기쿡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초과 전기쿡탑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합니다.
- ・일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에 설치된 경관조명 또는 외부마감(커튼월룩, 확장창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의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이며, 옵션 선택 및 타입별 평면 구조에 따라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가스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소방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소방 시설(차압 측정공)이 세대 현관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등급 관련 별도의 등급 인증은 진행되지 않으며, 단 실별 인출구 수 등 정보통신설비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1등급 심사기준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욕실 오배수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에 적극 협 조해야 합니다. 단, 최하층 세대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층상배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층 세대 욕실 급수/급탕 분배기가 하부층 천장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단, 최하층 세대는 해당욕실 천장내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일부 아파트 동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고 렌지후드 덕트커버에 자동식소화기용 전기차단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덕트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용 가스차단기 및 전기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실 루버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 •욕실 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며, 각 욕실의 배관 길이에 따라 가동소음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환기팬, 천장 점검구 및 PD내부 배관 점검용 내시경홀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세대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의 위치에 따라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침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ㆍ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세탁실, 실외기실 천장에 설비배관(욕실배기/주방배기/세대환기)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raemian.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65-1 (☎032-834-2549)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